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군복무·출산크레딧 적용 시점 조정 및
출산크레딧 비용의 국가 전액 부담〉

■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352호)

2025.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군복무·출산크레딧 적용 시점 조정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5
다. 관계 기관 의견	11
2. 출산크레딧 비용의 국가 전액 부담	13
가. 개정안의 내용	13
나. 검토의견	14
다. 관계 기관 의견	16

I. 개요

1.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35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선민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9. 29.
- (3) 회 부 일 : 2025. 9. 3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군 복무, 출산 등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가입자가 군 복무를 마치거나 출산한 경우 바로 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고, 재원 부담이 미래로 이연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재 출산크레딧의 소요 재원은 국고에서 30%, 국민연금기금에서 70%를 충당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정책적 필요에 의해 도입한 제도의 재원 부담을 국민연금 가입자가 짊어지게 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발생 시점을 각각 복무를 마친 날과 자녀를 출산한 날로 앞당기고, 출산 크레딧의 소요 재원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 및 제19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군복무·출산크레딧 적용 시점 조정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군복무·출산크레딧이 적용되는 시점을 현행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서 각각 ‘복무를 마친 날’과 ‘출산한 날’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u>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u>(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u>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u>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 -----<u>복무를 마친 경우</u> <u>복무를 마친 날(복무를 마친 이후</u> <u>최초로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u> <u>가 된 날을 말한다)에 그 복무기간</u>-----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u>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u>

현행	개정안
<u>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u> 1. 2. (생략)	<u>자녀를 출산한 때에는 그 자녀를 출산한 날(자녀를 출산한 이후 최초로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에-----</u> <u>-----</u> <u>-----</u>. 1. 2.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 2025년 4월 법률 제20903호로 개정·공포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이하 “법률 제20903호”라 한다)에 따라 군복무·출산크레딧의 보장성이 강화되었고, 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군복무크레딧) 종전에는 군복무기간 중 최대 6개월까지만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되었으나, 법률 제20903호에 따라 그 상한이 12개월로 확대되었음.

(출산크레딧) 종전에는 둘째 자녀부터 가입기간(둘째 12개월, 셋째 이상 각 18개월)을 추가 산입하되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되었으나, 법률 제20903호에 따라 그 상한이 폐지되고 첫째 자녀(12개월)부터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도록 확대되었음.

< 국민연금 군복무·출산크레딧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법률 제20903호 (2025. 4. 2. 공포 2026. 1. 1. 시행)
제18조(군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u>6개월을</u>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군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 ----- ----- ----- ----- -- <u>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u> ----- ----- -----.

현행	법률 제20903호 (2025. 4. 2. 공포 2026. 1. 1. 시행)
1. ~ 4. (생략) ②·③ (생략) <u><신설></u>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u>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1. 자녀가 <u>2명인 경우 : 12개월</u>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u>둘째</u>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u>12개월</u>에 2 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③ (생략) <u><신설></u>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u>자녀가-----</u> ----- ----- ----- ----- ----- ----- <u>. <단서 삭제></u> 1. -----<u>2명 이하인-----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u> 2. -----<u>첫째 및 둘째-----24개월-----</u> ----- ②·③ (현행과 같음) <u>④ 제1항에 따른 자녀 수의 인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

현행	법률 제20903호 (2025. 4. 2. 공포 2026. 1. 1. 시행)
	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2008년 1월 1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이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얻은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9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안은 군복무·출산크레딧이 적용되는 시점을 현행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서 각각 ‘복무를 마친 날’과 ‘출산한 날’로 앞당기려는 것으로,

군복무·출산크레딧의 혜택을 단기에 가시화하여 효능감을 높이고, 이에 따른 주된 비용을 현세대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현행법에 따른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은 각각 2008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수행한 경우와 자녀를 얻은 경우부터 적용되고,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때에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인정받도록 설계되어 군복무·출산크레딧 적용 대상자가 아직 많지 아니한 상황이지만,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각각 앞당기게 되면 2026년부터 5년간 연평균 약 1조 4,400억원(군복무크레딧 4,353억원 + 출산크레딧 1조 47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단기간 내 증대되는 재정부담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전망 >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11,205	12,952	14,244	15,823	17,774	71,999	14,400
군복무크레딧	3,824	4,174	4,232	4,488	5,046	21,764	4,353
출산크레딧	7,381	8,778	10,012	11,335	12,729	50,234	10,04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참고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크레딧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주된 부분을 현세대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미래세대에 그 비용이 전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었으나,

산입 시점을 앞당기게 되면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단기간 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논의된 경과 등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둘째, 현행법에서는 군복무·출산크레딧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인 점에 맞추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A값(최근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인정소득액(군복무크레딧은 A값의 50%, 출산크레딧은 A값의 100%)을 산정하고 있는데,¹⁾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앞당길 때 인정소득액 적용 기준이 되는 A값의 산정 시점도 함께 앞당겨 ‘복무기간을 마친 날이 속하는 연도의 A값’과 ‘출산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A값’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셋째, 현행법령에서는 「민법」에 따른 친생자뿐 아니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된

1)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2025. 4. 2. 공포 2026. 1. 1. 시행>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9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연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제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자녀 등에 대하여도 출산크레딧을 적용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면서,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었거나 과양(罷養)된 경우에는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제한하고, 이미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 자녀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이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²⁾

개정안에 따라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이 ‘출산한 날’로 앞당겨지게 되면, 해당 가입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기까지 과양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초래될 경우 이미 추가 산입된 가입기간을 기본연금액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할지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넷째, 병역의무의 종료에 관한 사항을 정한 「병역법」 제72조제1항3)에서는 현역·예비역·보충역 병(兵)의 병역의무가 40세에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부터 안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안 부칙 제2조는 군복무크레딧의 수혜 범위를 개정안이 의도한 취지에 비하여 과다하게 확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2)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자녀의 인정 범위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는 자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는 때에 이미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1. 「민법」에 따른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된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자녀의 부 또는 모(양부모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부 또는 모의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없다.

1. 다른 사람의 양자로 된 경우

2. 과양(罷養)된 경우

③ 법 제19조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 자녀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을 할 수 없다.

3) 「병역법」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①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한 법률 제20903호 부칙 제2조를 참고하여 안 제18조제1항의 적용례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섯째, 안 부칙 제3조에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안 제19조제1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얻은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얻은 자녀가 있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얻은 자녀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을 적용할 것인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법률 제20903호 부칙 제3조제1항을 참고하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첫째 자녀를 얻어 종전규정을 적용받더라도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얻은 경우라면 종전규정에 따른 상한(50개월)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출산크레딧의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한 같은 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안 제19조제1항의 적용례를 정비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군복무크레딧 또는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려는 등의 내용으로 한지아의원(의안번호 제8591호), 위성곤의원(의안번호 제9304호) 및 남인순의원(의안번호 제13978호)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일부수용

- 군복무·출산 등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현세대가 부담하는 차원에서 군복무·출산크레딧 사전 지원 필요성에 공감함. 다만, 당장의 재정부담이 확대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 신중검토

- 군복무·출산크레딧 적용 시점이 앞당겨지게 되더라도 수혜자인 국민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고, 총 소요 재원은 이론적으로 동일하며,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약 1,300조원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통한 적립금 확대가 적절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으므로 제도의 효과, 수혜자의 혜택 여부, 정부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출산크레딧 비용의 국가 전액 부담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데 드는 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제3항).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u>전부 또는 일부</u>를 부담한다.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③ ----- ----- --<u>전부</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령에는 출산크레딧 관련 일반회계와 국민연금기금 간 비용 분담률이 직접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정부 내부 방침에 따라 출산크레딧 도입 이후 현재까지 일반회계 부담률을 30%로 설정하여 국가재정을 운용하여왔음.

- 참고로, 군복무크레딧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드는 비용은 전액 국가(일반회계)가 부담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⁴⁾

< 출산크레딧 비용 분담 현황: 2008 ~ 2024 >

(단위: 명, 백만원)

연 도	'08	'09	'10	'11	'12	'13	'14	'15	'16
수급자	5	14	24	42	103	140	287	412	627
총비용	0.4	2	6	12	27	49	76	137	222
일반회계	-	2	2	3	4	8	19	33	45
기금	0.4	-	4	9	23	41	57	104	177
연 도	'17	'18	'19	'20	'21	'22	'23	'24	누계
수급자	888	1,000	1,354	2,067	2,959	4,269	5,037	7,048	7,222
총비용	317	408	507	742	1,115	1,656	2,245	2,962	10,485
일반회계	116	157	177	177	199	338	525	1,114	2,919 (27.8%)
기금	201	251	330	565	916	1,318	1,720	1,848	7,566 (72.2%)

주: 각 연도 말 기준 자료이며, 전전년도 결산액에 따라 정산하고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4)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2025. 4. 2. 공포 2026. 1. 1. 시행>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 개정안은 출산크레딧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일반회계)가 부담하게 하려는 것으로,

출산크레딧 도입 당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 장려’라는 국가 정책적 차원이 고려된 점과 저출생 문제 해결은 국가적 과제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산크레딧 비용을 전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 다만, 출산 장려의 정책 목적이 달성되면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증가하게 되어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국가의 비용 부담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출산크레딧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게 하려는 내용 등으로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78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일부수용

- 사회적 기여(출산)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현세대가 부담하는 차원에서 출산크레딧에 대한 국가의 비용 부담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함. 다만, 당장의 재정부담이 확대되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 신중검토

- 2008년 도입된 출산크레딧은 군복무크레딧과 달리 출생률 제고에 따른 가입자 증가 효과 등을 감안하여 정부(일반회계)와 국민연금기금이 그 비용을 분담하도록 설계되었고, 정부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출산크레딧에 대한 일반회계의 비용 부담률이 높아지게 되면 저출생 지원 등 시급한 정책대응 재정소요에 긴밀한 대응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바,

출산크레딧에 대한 정부(일반회계) 분담비율 확대는 혜택의 귀속 등 출산크레딧의 당초 취지, 투자 대비 효과성, 정부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06